

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) 생략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 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2. 생략	제4조(집회) (현행과 같음)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 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 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2. 현행과 같음